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-1027호

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75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2008-173호(2008.05.22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제2018-74호(2018.07.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-136호(2021.07.29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3-16호(2023.02.0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57호(2025.05.0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서류가 제출되어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,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8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6. 5. 28. ~ 2026. 6. 12. (14일이상)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
- 1)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(☎ 02-351-7482)
- 2)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07-6040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
라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6-2일대(면적:29,884㎡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이재필)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42 흥남빌딩 205호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- 5) 사업시행인가일 : 2018. 7. 19.
- 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 8개동 620세대(임대 86세대/장기전세4세대 포함),
지하3층/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
- 7) 변경내용
 - 주요변경내용 기재
 -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

부지	기 준	변 경	비고
도로	5,554.0 m ²	좌동	-
공원	22.0 m ²	좌동	-
사회복지시설	1,358.0 m ²	1,092.0 m²	감)266.0m ²
도서관	2,578.0 m ²	좌동	-
공공임대주택	-	(55.6) m ²	환산부지면적
주택부지 (획지8-1)	20,372.0 m ²	20,638.0 m²	증)266.0m ²
합계	29,884.0 m ²	좌동	-

건축계획	기 준	변 경	비고
기준용적률	210.0 %	좌동	-
최대용적률	263.9 %	291.2 %	증)27.3%
건폐율	60.0 %	좌동	-
최고높이 /최고층수	66m 이하/ 22층 이하	86m 이하/ 29층 이하	증)20m/7개층
용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좌동	-

- 건축물의 대지면적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· 용도 등 건축계획의 변경

구 분	기 준	변 경	비고
구역면적	29,884.00 m ²	좌동	-
대지면적	20,372.00 m ²	20,638.00 m²	증)266.0m ²
건축면적	4,622.20 m ²	4,363.12 m²	감)259.08m ²
건폐율	22.69 %	21.14 %	감)1.55%
연면적	82,700.40 m ²	99,936.60 m²	증)17,236.2m ²
용적률	263.89 %	291.19 %	증)27.3%
규모	지하2층, 지상22층	지하3층, 지상29층	증)지하1/ 지상7개층
높이	65.35 m	85.85 m	증)20.5m
용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좌동	-
세대수	578 세대	620 세대	증)42세대

8) 기타사항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참조

마. 기타사항

- 1)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) 공람도서는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 등(관계부서 협의)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